- "(주)오션소프트"(이하 "계약상대자"라 한다)와 "주식회사 웨이블"(이하 "발주자"라 한다)은 "발주자"의 "고객"이 주관하는 상기 용역명의 외주 개발 용역 계약 수행의 성공적인 완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- 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"고객"이 주관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"발 주자"가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"계약상대자"가 원활히 수행하 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,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을 기초 로 공동의 발전과 성공적인 임무 와수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당사자 간의 권리) "발주자"와 "계약상대자"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
- 제4조(용역의 범위) 본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"계약상대자" 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 업무 및 추가 업무를 말한다.
 - ① "기본업무"라 함은 "계약상대자"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 서 과업지시서 상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.
 - ② "추가업무"라 함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용역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"발주자"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.
 - ③ "하자유지보수"라 함은 "고객" 검수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의미한다.
- 제5조(상호협조) "발주자"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"계약상대자"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"계약상대자"는 용역 수 행과정에 있어서 "발주자"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내용에 관하여 "발주자"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6조(계약기간)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계약 종료일전 상호 합의에 따라 본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또한 계약기간은 주말을 포함한 것을 기

준으로 한다.

- 제7조(계약금액) 본 계약의 총 금액은 계약서 전면에 따르며, 지급 일정은 제 10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.
- 제8조(계약보증금) ① "계약상대자"는 계약 체결 시 <u>계약금액의</u>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단 계약보증금을 대체할 경우에는 해당액의 "이행보증보험증권"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근거에도 불구하고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」의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 제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계약금액 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.
- 제9조(계약보증금의 처리) ① "발주자"는 "계약상대자"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 된 후 "계약상대자"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며, "계약상대자"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을 "발주자"에 귀속한다.
 - ② "발주자"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, "계약상대자"의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당해 계약보 증금을 "발주자"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"계약상대자"에게 지급할 사업 대금 혹은 타지급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"계약상대자" 가 "발주자"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대가의 지급) ① "발주자"는 제17조의 "계약상대자"의 계약이행에 대한 완료를 검사한 후, "수행자"의 청구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"발주자"가 부담키로한 대금을 지급한다. 단, 제20조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 할 수있다.
- 총 계약금액: 14,500,000 원 (부가세 별도)
 - 01. 선금 : 2,9000,000 원 (부가세 별도) : WBS 발주 승인 완료 후 15일 이내

- 02. 1차 중도금 2,9000,000 원 (부가세 별도): 퍼블리싱 고객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
- **03. 2**차 중도금 **2,9000,000** 원 (부가세 별도) : 전체 개발 완료 후 **15**일 이내
- 04. 3차 중도금: 2,9000,000원 (VAT 별도): 웨이블 QA/QC 완료 후 15일 이내 (오류 3건 이하)
- **05.** 잔금 **2,9000,000** 원 (부가세 별도) : 서비스 출시 완료 후 **15** 일 이내
- ② "발주자"는 제1항의 대가지급은 청구를 받은 후,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"계약상대자"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.
- ④ "계약상대자"는 계약 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<u>선급금 이행 보증보험을 "발주자"에게 제출</u>하여야 하며 "계약상대자"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"발주자"는 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.
- ⑤ 본 조의 각 지급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 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하며 "계약

상대자"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"발주자"는 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.

- 1차 중도금 : 중도금 이행 보증보험
- 2차 중도금 : 중도금 이행 보증보험
- 3차 중도금 : 중도금 이행 보증보험
- 잔금: 잔금 이행보증보험, 하자 이행 보증보험
- ⑥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이행 확인 완료 확인서를 득하 였을 때 지급 조건의

만족으로 보고 계약상대자의 보증 보험의 의무 또한 해제키로 한다.

제11조(지체상금) ① "계약상대자"는 "발주자"가 요청한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, 지체상금으로서 계약상의 지체상금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"발주자"에게 현금으로 납부하

- 여야 한다. 단, "계약상대자"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완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"발주자"가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.
- 제12조(계약의 변경) "발주자"와 "계약상대자"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변경 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쌍방서명 날인 후 "발주자"와 "수행자"가 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과업내용의 변경) ① "계약상대자"는 "발주자"와 협의하여 결정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필요할 경우 "발주자"의 동의를 얻어야한다.
 - ② "발주자"와 "계약상대자"는 쌍방의 합의하에 예산 및 과업 지시서의 내용을 수정,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변경계약 서를 작성한다.
 -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, 문자메세지 등의 전자 메신저 또는 통화 등의 구두
 - 로 합의한 사항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한다.
- 제14조(비밀보장) ① "계약상대자"는 용역수행과정을 통하여 지 득한 제반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, "발주자"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.
 - ② "계약상대자"가 고의로 관련 정보를 노출하거나, 부주위로 인하여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"발주자"는 이로 인해 발생되 는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15조(결과물의 제출) ① "계약상대자"는 본 계약의 수행(과업지시서)에 관한 결과자료를 다음과 같이 "발주자"에게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매주 금요일 제출
 - 1) 매주 금요일 주간 보고서 제출

- 2) 매주 금요일 해당 주간 작업한 소스코드 제출(Github)
- 2. 개발 완료 후 제출
 - 1) 파일 구조도
 - 2) 주요 함수/클래스 명세서
 - 3) API 명세서
 - 4) 컬럼/스키마 명세서(정의 포함)
 - 5) 테이블 명세서(정의 포함)
 - 6) 주석 모음본
 - 7) 서버,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물리 구성도
 - 8) 데이터베이스 논리 구성도
- 3. 그 외 용역 수행 산출물 모두
- ② "발주자"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"계약상대자"는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. 이 경우 대가 지급 기간은 보완 승인 일자로부 터 산정된다.
- ③ "계약상대자"는 "발주자"가 지정한 방법으로 매주 금요일 16:00까지 최신 소스코드와 개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"발주자"는 1항과 3항에 따라 "계약상대자"가 제출한 산출물을 검수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으며 해당 문제로 인하여 발주자와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"계약상대자"가 "계약상대자"의 금원으로 전액손해배상키로 하며 손해액은 "발주자"가 정하기로 한다. 이때, "계약상대자"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
- 제16조(용역 결과물의 저작권) 본 계약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 및 수정·개선을 통해 제작된 2차적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"발주자"가 소유하며, "발주자"는 필요 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제17조(검수) ① "계약상대자"는 과업지시서 상의 용역을 완수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"발주자"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. 진행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"발주자"는 "계약상대자"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수를

완료하여야 한다.

- ③ "발주자"가 제2항의 검사기간 내에 당해 계약내용의 이행 사실을 검수하기 곤란
- 한 경우, "계약상대자"와 협의를 통해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모든 검수는 "고객"의 검수가 완료되어야 최종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며 "고객"의

검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"발주자"는 이를 지체없이 "계약상 대자"에게 알리고 대금지

급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
- 제18조(하자 유지보수) ① 본 계약의 고객이 최종 검수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
 - ② 하자 유지보수의 범위는 본 조 1항에 정한 최종검수 전까지 사항의 전부로 한다.
 - ③ 계약 진행 중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전부를 하자 유지보수의 범위로 한다.
- 제18조(권리의무의 양도) ① "계약상대자"는 "발주자"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와 권리의 전부를 제3자에게이전할 수 없다.
- 제19조(감액 또는 환수) ①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액의 업무량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, "발주자"는 즉시 부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 되었을 경우 이 부당금액을 "발주자"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20조(해약) ① "계약상대자"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"발주자"가 판단하는 경우 "발주자"는 본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
 - 2. "계약상대자"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

-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
- 3.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산적인 계약관리를 방해 하는 불법·부정행위가 있는 경우
- 4.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- ②"발주자"는 제1항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,당해 계약의 진행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,계약금액의 정산은 진행부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단, "발주자"가인수를 거부할 경우 "계약상대자"는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- 제21조(품질보증) ① 계약목적물의 품질 수준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 - ② "계약상대자"는 과업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,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계약목적물이 이 계약 및 부속 서류(과업내용서 등)에 명시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, "발주자"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"계약상대자"에게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단, "계약상대자"의 품질보증 범위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과업범위로 한정되며, 발주자는 "계약상대자"에게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.
 - ③ "계약상대자"는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언어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"발주자"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. "발주자"는 "계약상대자"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"계약상대자"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,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- 제22조(사업수행 시 관리감독) "발주자"는 계약서, 과업내용서 등 서면자료에 기초하여 "계약상대자"의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·감독할 수있다.
- 제23조(계약목적물의 멸실·훼손에 대한 책임)① "계약상대자"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에

- 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계약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"계약상대자"가 책임
- 을 부담한다. 다만, 멸실 또는 훼손이 "발주자"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 다.
- ② "계약상대자"가 계약목적물을 "발주자"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계약목적물의 멸

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발주자가 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멸실 또는 훼손이 "계약상대

자"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.

- 제24조(손해배상)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"계약상대자" 귀책사유로 인해 "발주자" 또는 "고
 - 객"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"계약상대자"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는다.
 - ② "계약상대자"의 귀책사유로 인해 "발주자"의 업무상 손해 및 기관이미지 손상 등의
 - 손해가 발생할 경우, "계약상대자"의 책임과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.
- 제25조(해석 및 분쟁) ① 이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"발주자"의 해석에 의하며,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.
 -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.
 -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"발주자"와 "계약상대자"간에 소송이 일어날 경우 재판은 "발주자"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- 제26조(그 밖의 중요한 사항)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동법 규칙에 따르도록 한다.
- 제27조(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책임)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

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"계약상대자"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, "발주자"는 면책시켜야 한다.

제28조(특약사항)

혜 림 (인)

① 해당 연대보증인은 해당 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며 해당 계약으로 말미암아 "발주자" 또는 "고객"에게 발생한 피해에 있어 "계약 상대자"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(연대보증인) 이름: (인) 주민등록번호: 연락처:

"발주자"와 "계약상대자"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,성실 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7월 10 일

"계약상대자" ㈜오션소프트 대 표:이 창 빈(인) "발 주 자" 주식회사 웨이블 대 표:방

[과업지시서]

제 1조(개발 범위)

1) Back-end: Nest.js

2) Front-end: React.js

4) Database: Postgresql

5) Infra: AWS EC2, Load Balancer, Auto Scailing, RDS

6) PC Web: Super Admin Console(관리자용 웹)

제 2조(개발 대상 기능)

1) 아래 URL로 대체

제 3조(특수 기능)

- GPT 활용
- 포트폴리오 템플릿

제 4조(기타)

1) 개발 정책은 "발주자"가 제공한 정책을 따라야 함